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자치행정국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4월 26일, 경상북도지사
- 나. 회부일자 : 2022년 4월 26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4월 28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 나. 제안이유
 - 2022년 4월 20일「공직선거법」의 개정 · 시행으로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 조정이 필요한 시 · 군의원 선거구에 대하여 「경상북도 시 ·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근거로 시 · 군별 의원 정수와 지역구 시 · 군의원 선거구의 명칭 · 구역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함.

다. 주요내용

- 경상북도 시 · 군의회의원 총 정수는 4명을 증원하여 288명 (지역구 251, 비례대표 37)으로 하고, 시 · 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개정함.
 - ※ 「공직선거법」부칙 제19조에 따라 신설된 도의원 지역구에 시 · 군의원 증원(포항 1명, 김천 1명, 구미 2명)
- 시 · 군의원 지역구의 명칭 · 구역 및 의원정수는 「붙임」별표와 같음.※ 시 · 군의원 선거구 수 : 105개 → 106개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이승언)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2022년 4월 20일 개정 ·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년 6월 1일에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할 경상북도 시 · 군별 시 · 군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나. 주요내용

○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경상북도 시 · 군의회의원 총 정수 288명에 대하여「경상북도 시 · 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기준으로 안 제2조 [별표] "경상북도 시 · 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 · 구역 및 의원정수"를 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 [별표]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 포항시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도의원 선거구가 신설 ·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선거구는 "양학동"을 제외하였으며, "라"선거구는 "바"선거구의 장량동의 법정동인 "양덕동"과 통합하여 "마"선거구로 명칭 변경하고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선거구는 "다"선거구의 "양학동"을 통합하여 "라"선거구로 명칭 변경하고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변경하고, "바"선거구는 "장량동"의 법정동인 "양덕동"을 제외하고

"장성동"으로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선거구는 "동해면"을 제외하고 "아"선거구의 "해도동", "송도동"을 통합하여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변경 하였습니다.

- "카"선거구는 인구가 의원 1인당 기준인구 하한선인 8,682명을 미달1)하여 "사"선거구 "동해면"을 통합하여 "아"선거구로 명칭 변경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타"선거구는 인구가 의원 1인당 기준인구 상한선인 26,045명을 초과2)하여 "카"선거구로 명칭 변경하면서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변경하였으며, "타"선거구는 폐지하였습니다.

¹⁾ 포항 "카"선거구 1인당 6,645명, 2,037명 미달

²⁾ 포항 "타"선거구 1인당 28.083명, 2.038명 초과

- 경주시의 경우「공직선거법」에서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지역여건 등을 함께 반영하여 시의원 선거구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선거구는 인구가 의원 1인당 기준인구 상한선인 21,061명을 초과3)하여 "현곡면"을 제외하였고,
 - "나"선거구는 "중부동", "황오동"을 제외하고 "가"선거구의 "현곡면"을 통합하여 조정하였습니다.
 - "라"선거구는 "불국동"을 제외하고 "마"선거구의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을 통합하여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 양북면은 문무대왕면으로 개칭('21)
 - "바"선거구를 "마"선거구로, "사"선거구를 "바"선거구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 "아"선거구에 "자"선거구의 "선도동"을 통합하여 "사"선거구로 명칭 변경하고 2인 선거구에서 3인 선거구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선거구는 "나"선거구의 "중부동", "황오동"과 "라"선거구의 "불국동"을 통합하여 "아"선거구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자"선거구는 폐지하였습니다.
- 김천시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도의원 선거구가 신설 ·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³⁾ 경주 "가"선거구 1인당 25,033명, 3,972명 초과

- "가"선거구의 "아포읍", "농소면", "남면"과 "나"선거구의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을 통합하여 "사"선거구로 신설되었으며,

"다"선거구는 "라"선거구로, "라"선거구는 "다"선거구로, "마"선거구는 "나"선거구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바"선거구는 "대곡동"을 제외하고 "가"선거구의 "감천면"과 "조마면"을 통합하여 "마"선거구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가"선거구의 "율곡동"을 "바"선거구로, "바"선거구의 "대곡동"을 "가"선거구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 구미시의 경우「공직선거법」에서 도의원 선거구 2개가 신설
 ·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시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선거구의 "선주원남동"은 "나"선거구로, "도량동"은 "다"선거구로 조정되면서 3인 선거구에서 각각 2인 선거구로 변경하였고,

"나"선거구는 "지산동", "광평동"을 제외하고 "가"선거구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 원평1동과 원평2동을 원평동으로 합병('21) "다"선거구는 "나"선거구의 "지산동"과 "광평동"을 통합하여 "라"선거구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 공단1동과 비산동을 비산동으로 합병('21), 공단2동을 공단동으로 개칭('21) "라"선거구는 "마"선거구로 명칭 변경하고, "마"선거구는 "자"선거구로 신설하였습니다. "바"선거구는 "양포동"을 제외하고 "아"선거구로 명칭 변경하면서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변경하고, "양포동"은 "차"선거구로 신설하였습니다. ※ 산동면에서 산동읍으로 승격('21) "사"선거구는 "바"선거구로, "아"선거구는 "사"선거구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 영주시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의 조정은 없으나 의원 1인당 기준인구 하한선인 4,249명을 미달∜하여 이를 반영하여 시의원 선거구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선거구는 "나"선거구의 "상망동"을, "라"선거구는 "마"선거구의 "휴천1동"을 통합하여 조정하였습니다.
- 경산시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지역여건 등을 함께 반영하여 시의원 선거구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가"선거구는 "마"선거구의 "남산면"을, "라"선거구는 "압량면"을 제외하고 "마"선거구의 "중앙동"을, "마"선거구는 "중앙동"과 "남산면"을 제외하고 "라"선거구의 "압량면"을 통합하여 조정하였습니다. ※ 압량면에서 압량읍으로 승격('20)
- 의성군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됨에 따라
 - "가"선거구는 "단촌면"을 제외하였으며, "다"선거구는 "단촌면"을 통합하여 조정하였습니다.

⁴⁾ 영주 "가"선거구 1인당 3,433명, 816명 미달 영주 "라"선거구 1인당 3,931명, 318명 미달

- 예천군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 조정과 의원 1인당 기준인구 하한선인 3,490명을, 상한선인 10,468명을 미달 및 초과5)하여 이를 반영하여 군의원 선거구를 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나"선거구는 "라"선거구의 "용문면"과 "유천면"을 통합하고, "다"선거구는 "지보면"과 "풍양면"제외하여 조정하였으며, "라"선거구는 "용문면"과 "유천면"을 제외하고 "다"선거구의 "지보면"과 "풍양면"을 통합하여 조정하였습니다.
- 그 외 시 · 군의 선거구역과 의원정수는 현행과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 상주시 사벌면은 사벌국면으로 개칭('20), 청송군 부동면은 주왕산면으로 개칭('19)
- 비례대표 의원은 「공직선거법」제23조 제36)항에 따라 개별 시 · 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획정한 것입니다.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2022. 4. 20.)」의 개정 · 시행으로 도의원 선거구 조정 및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시 · 군의원 선거구에 대하여 「경상북도 시 · 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시 · 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여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⁵⁾ 예천 "나"선거구 1인당 3,411명, 79명 미달 예천 "다"선거구 1인당 12.861명, 2.393명 초과

⁶⁾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 ~ ②(생략) ③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별표 2, 3 및 부칙 제19조에 따라 신설된 도의원 지역구에 증원된 시 · 군의원을 반영하여 도의원 지역구별로 시 · 군의원정수를 배분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31일 기준 시 · 군별 인구비율과 읍 · 면 · 동수 비율,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 배분한 기준을 바탕으로 시장 · 군수, 시 · 군 의회, 각 정당의 의견과 「경상북도 시 · 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포항시, 김천시, 구미시는 도의원 증원 및 선거구 조정으로 시의원 정수가 증가하였으며, 선거구의 통합, 신설, 구역변경, 의원정수 변동 등으로 8개 시 · 군의 34개 선거구가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례가(2014헌마189, 2018. 6.28.)에 따른 시 · 군의원 불부합 9개 선거구8)도 모두 해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생략
-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⁷⁾ 헌법재판소 판결내용 : 시·도의원지역구 획정에서 허용되는 인구 편차 기준은 상하 50%

⁸⁾ 시·군의원 선거구 불부합 현황 : 포항(3), 경주(1), 구미(1), 영주(2), 예천(2)